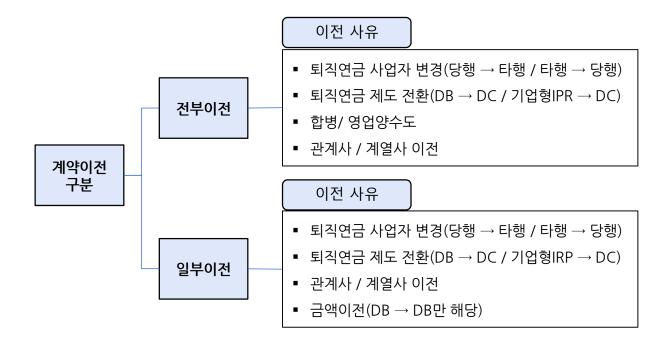
Ⅰ.계약이전 개요

1. 계약이전 이란?

기존의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(일부 계약이전의 경우 기존 계약 유지)하고, 다른 퇴직 연금사업자로 가입자 또는 적립금을 이전하는 업무

2. 계약이전 형태



- □ 전부이전: 기존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것
- □ **일부이전:** 기존 계약에서 가입자 일부 or 적립금 일부를 이전하는 것

3. 계약이전 사유

1) 퇴직연금사업자 변경

- ① 의의
 -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기존의 계약의 전 부 or 일부를 이전하는 것
 - 이전 형태
 - DB(甲퇴직연금사업자) → DB(乙퇴직연금사업자)
 - DC(甲<u>퇴직연금사업자</u>) → DC(<u>乙퇴직연금사업자</u>)

② 증빙 서류

- 별도의 증빙 없음(변경전 규약, 변경후 규약 의해 확인 가능)

2) 퇴직연금 제도전환

- ① 의의
 - 퇴직연금제도를 전환하여 기존 제도에서 전환된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자와 적립금을 이전하는 것
 - 이전 형태
 - <u>DB(甲퇴직연금사업자)</u> → <u>DC(甲퇴직연금사업자)</u>: 동일 퇴직연금사업자 內 제도전환
 - DB(甲퇴직연금사업자) → DC(乙퇴직연금사업자): 타 퇴직연금사업자간 제도전환
 - 기업형IRP(甲퇴직연금사업부) → DC(甲퇴직연금사업자): 동일 퇴직연금사업자 內 제도전환
 - 기업형IRP(甲퇴직연금사업부) → DC(乙퇴직연금사업자): 타 퇴직연금사업자간 제도전환
 - ※ DC에서 DB로의 제도전환은 불가함

② 증빙 서류

- 별도의 증빙 없음(변경전 규약, 변경후 규약 의해 확인 가능)

3) 기업합병

- ① 의의
 - 2개 이상의 기업이 상법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함.
 - 법인이 합병하면 당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,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에 이전 됨.
 - 합병 시 퇴직연금 관련 부분도 포괄승계 하기로 했다면 해당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변경 신고함으로써 승계가 가능함

② 증빙 서류

- 합병계약서

4) 사업의 양수도

① 의의

-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, 즉,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
- 즉, 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함
- 근로자의 근로 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음. 기업의 양수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를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므로 퇴직연금 이전 가능

② 증빙 서류

- 포괄양수도 계약서

5)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

① 의의

-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"영업양도"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가 가능함
-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설정되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음

② 증빙 서류

- 포괄양수도 계약서

6) 기업분할

① 의의

- 기업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(신설법인)으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, 일부이전 방법으로 기존 회사에 계약이전 신청하여 신설법인에서 신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전 가능

② 증빙 서류

- 기업분할 계약서 or 고용승계계약서

7) 관계사(계열사) 이전

① 의의

- 근로자가 기존에 소속 회사에서 기존 소속회사의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.
- 관계사(계열사) 이전 시, 새로운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속년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 진행해야 함
 - 기존 근속년수를 인정하는 경우 → "계약이전"으로 진행
 - 기존 근속년수를 不인정하는 경우 → "퇴직연금 지급"으로 진행("계약이전"에 해당하지 않음)

② 증빙 서류

- 회사 인사발령 공문 등

4. 계약이전 vs 계좌이동

1) 퇴직연금 이전 처리 방법

- 퇴직연금 계약을 이전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나 전산처리 방법에 따라 "계약이전"과 "계좌이동"으로 분류하여 정의함

2) 계약이전

- 이관기업(계약이전 보낼 기업)과 수관기업(계약이전 받을 기업) 두 업체 모두 당행에 퇴직연금 제도 가 도입되어 있을 경우
- 계좌 그대로 이전은 불가능하며, 일반 계약이전방식(현금이전)으로 진행 필요

3) 계좌이동

- 수관기업(계약이전 받을 기업)이 퇴직연금제도를 당행에 도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
- 계좌이전 그대로 이전처리가 가능하며 "계좌이동(현물이전)"으로 진행 가능
- 기존 퇴직연금 가입된 수관기업에 "가입자추가"하여 진행 필요

4) 계좌이전/계좌이동 전산처리 방법

계약이전

- 계약이전 관련 서류 징구 및 계약이전 해지 처리 BPR 의뢰
- 퇴직연금서류 발송 목록에 서류 생성
- 사유별 징구 서류 징구 요망
- 가입자 관련 신규 서류 등 신규 관련 모든 서류 징구 요망

② 계좌이동

- 통합단말 [24] 화면에서 계좌이동 등록
- 합병회사 "고객번호"로 계좌이동(전부이전만 가능)
- 퇴직연금서류 발송 목록에 서류가 생성되지 않으며, 제신고 관련 수신 장표로 서류 발송 필요
- 계좌이동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기본적인 계약관련 서류는 징구 필요
 - 계약이전 근거서류(양수도 계약서 등)
 - 운용관리계약서, 자산관리신탁계약서, 운용관리계약신청서, 사용인감신고서 등
 - 제신고서
 - ☞ 계좌이동으로 처리시, 가입자 관련 서류는 별도 징구 불필요함

5. 현물이전

□ 현물이전

- 기존 가입자 계좌의 "상품계좌번호"가 변경 없이, 그대로 이전되는 형태
- 상품의 중도해지가 일어나지 않고, 기존 보유상품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계약이전됨

□ 현물이전 방식 계약이전 처리 관련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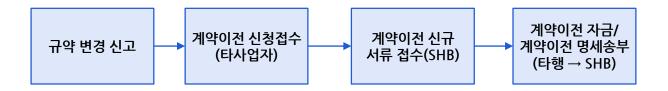
- ① 현물이전은 당행 퇴직연금 제도 간에서만 가능함. 현물이전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.
 - 당행 DC → 당행 DC(전부이전, 일부이전 모두 가능)
 - 당행 DB → 당행 DB(전부이전만 가능)
 - 당행 기업형IRP → 당행 기업형IRP
 - ※ 당행 기업형IRP → 당행 DC는 현물이전 불가
- ② 현물이전이 아닌 일반 계약이전으로 전산등록 후 상품이 매도된 상태에서는 거래 취소가 되지 않아 현물이전 방식으로 재거래가 불가함
 - → 계약이전 신청 시 현물이전 방식인지 일반계약이전(현금이전방식)인지 업무에 유의 요망
- ③ 이전 받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계좌번호가 새로 개설되어 있어야 계약이전 신청이 가능함
- ④ 현물이전은 상품의 중도해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유리한 바, 현물이전이 가능한 경우이면, 가급적 현물이전으로 신청 요망

Π . 타사업자에서 당행으로 계약이전 프로세스(타사업자 \rightarrow 당행)

1. 타사업자에서 당행으로 계약이전이란?

기존의 타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(일부 계약이전의 경우 기존 계약 유지)하고, 당행으로 "가입자" 또는 "적립금"을 이전하는 업무

2. 계약이전 프로세스



- □ 전부이전: 기존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것
- □ **일부이전:** 기존 계약에서 가입자 일부 or 적립금 일부를 이전하는 것
 - 당행에 이미 퇴직연금이 신규된 "일부 계약이전"의 경우에는 "규약변경 신고" 불필요
 - ※ 당행에 퇴직연금이 신규 되지 않은 경우에서, 최초의 "일부 계약이전"인 경우는 규약 신고 등 신규 절차에 준하여, 서류 징구 필요함

3. 계약이전 관련 규약 신고 방법 요약

계약이전 사유	규약 신고	규약 신고 주체	규약신고 방법	비고
• 퇴직연금사업자 변경	0	기존 퇴직연금가입자	규약변경	운용관리/ 자산관리 기관 변경
• 퇴직연금사업자 추가	0	기존 퇴직연금가입자	규약변경	운용관리/ 자산관리 기관 추가
• 퇴직연금 제도전환	0	기존 퇴직연금가입자	규약폐지(전환전제도) + 규약신규(전환후제도)	
• 기업합병,사업양수도 /법인전환	0	합병회사(양수기업)	규약변경	규약 3조 적용(회사) 변경
• 기업분할	0	분할회사	규약신규	
• 금액이전(DB)	Χ			

^{※ &}quot;기업합병(사업양수도, 법인전환)"과 동시에 "퇴직연금사업자 변경"시, 규약변경시 규약 3조(적용) 및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관련 내용을 함께 변경해야 함

4. 계약이전 관련 규약 신고 방법

업무 단계	상세
■ 규약 신고 (고용노동부 제출)	 1)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상황: 퇴직연금사업자 변경(甲은행 → 乙은행) ◈ 신고방법: 규약 변경 신고(운용관리기관/ 자산관리기관 변경) • 규약신고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• 대경 변경대비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• 변경후 규약(사본) ※ 운용/자산관리기관 조항 → 기존 사업자를 "신한은행"으로 변경 [운용/자산관리기관: ○○은행(변경전) → 신한은행(변경후)] • 근로자동의서(사본) • 동의명부(사본)
	 2)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- 상황: 퇴직연금사업자 추가[甲은행 → 甲은행, 乙은행(사업자추가)] ◈ 신고방법: 규약 변경 신고(운용관리기관/ 자산관리기관 변경) • 규약신고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• 규약 변경대비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• 변경후 규약(사본) ※ 운용/자산관리기관 조항 → 기존 사업자에 "신한은행"을 추가 • 근로자동의서(사본) • 동의명부(사본)
	3) 퇴직연금 제도전환 - 상황: 퇴직연금 제도 전환(동일사업자내 / 타사업자간) ① [동일 퇴직연금사업자內] DB(甲) → DC(甲), 기업형IRP(甲) → DC(甲) ② [타 퇴직연금사업자간] DB(甲) → DB(乙), 기업형IRP(甲) → DC(乙) ※ DB → DC 제도전환은 가능하나, DB → DC 제도전환은 불가함 ◈ [규약신고방법 1]: 폐지 신고(DB) + 규약 신규(DC) ④ 규약 폐지 신고(기존 DB) ・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※ 제도폐지사유 → "기타(제도전환: DB → DC)"로 기재 ・ 근로자동의서(사본) ・ 동의명부(사본)
	 ② 규약 신규 신고(DC) • 규약신고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• 규약변경대비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• 규약(사본) - DC • 근로자동의서(사본) • 동의명부(사본)

업무 단계	상세	
■ 규약 변경 신고 (고용노동부 제출)	 ● [규약 신고방법 2]: 규약 변경 신고 ● 규약 변경 신고(DB → DC) • 규약신고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• 대약 변경대비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※ 변경전(DB 규약) → 변경후(DC 규약) • 변경후 규약(사본) • 근로자동의서(사본) • 동의명부(사본) ※ 지방노동청에 따라서는 규약변경(DB → DC) 신고 방법으로 "규약변경대비표" 작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, 규약변경신고는 불가하고, "규약 폐지/ 신규" 방식에 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	
	 4) 기업합병, 사업양수도,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- 상황: A회사(피합병, 양도기업) → B회사(합병회사, 양수기업) 경우 ◈ [규약 신고방법 1]: 규약 변경 신고 [B회사(신청주체)가 신청] • 규약신고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• 규약변경대비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※ 변경사항: 규약 제3조(적용)의 "회사(사업장)" 부분 변경 등 • 변경후 규약(사본) • 근로자동의서(사본) ← B 근로자(A 근로자 포함 후)의 과반수 동의 • 동의명부(사본) • 근거서류: 합병계약서 or 포괄양수도계약서 등 ※ 근거서류는 지방노동청에 따라 필수 여부가 다를 수 있음 	
	 ● [규약 신고방법 2]: 폐지 신고(양도기업) + 규약 신규(양수기업) ① 규약 폐지 신고(양도기업) ← 양도기업(A회사) 신고 •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※ 제도폐지사유 → "기타(사업양수도 등)"로 기재 • 근로자동의서(사본) • 동의명부(사본) • 양수도계약서(필요 시) ② 규약 신규 신고(양수기업) ← 양수기업(B회사) 신고 • 규약신고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• 규약(사본) - DC • 근로자동의서(사본) • 동의명부(사본) • 양수도계약서(필요 시) 	

업무 단계	상세
■ 규약 변경 신고 (고용노동부 제출)	 5) 기업분할 - 상황: A회사(피분할회사) → A회사 + B회사(분할회사) ◈ 신고방법: 규약 신규 신고 [B회사(분할회사)가 신청] • 규약신고서(원본) ← 고용노동부 양식 • 규약(사본) - DC • 근로자동의서(사본) • 동의명부(사본) • 분할계약서(필요 시) ※ 기존 회사(A회사)는 퇴직연금을 계속 유지할 경우, 별도의 규약 변경등의 신고는 불필요함

5. 계약이전 시 징구서류

업무 단계	상세
■ 규약 변경 신고 (고용노동부 제출)	1) 규약변경 신고서류: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
 타 금융기관 계약이 전 해지 신청 접수 (당행 → 타사업자) 	 타금융기관에 계약이전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규약변경 수리공문 사본 근로자동의서 및 동의 명부 사본(규약변경 동의 + 계약이전 동의) 계약이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← 타사업자 양식으로 징구 퇴직연금 계약이전 공문 영업점 법인계좌 사본 영업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금융기관별로 신청서류가 다를 수 있음 →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 요망
■ 당행 계약이전 신규 서류 작성 (당행 → 당행)	 퇴직연금 신규 징구 & BPR 신규 신청(전부이전 경우) 계약이전등록신청서 규약변경(규약신규) 수리공문 사본 규약변경 대비표 변경 후 규약(사본) 퇴직연금 신규 서류(제도별 신규 서류)

업무 단계	상세
	 2) 가입자추가 서류 징구 & 가입자추가 등록(일부이전 경우 / 기 신규된 경우) • 계약이전등록신청서 • 퇴직연금 가입자추가 서류(제도별 서류 확인 요망) • 가입자부담금 존재 시 추가징구 서류: 연금계좌이체명세서(필수), 연금납입확인서(필수), 이익계산서(선택)
■ 당행 계좌로 계약이 전 자금 입금시 신규/ 입금 처리	 1) 퇴직연금 신규(전부이전 경우) 가입자부담금 존재 시 추가징구 서류: 연금계좌이체명세서(필수), 연금납입확인서(필수), 이익계산서(선택) 통합단말 [801] 화면에서 "입금예정관리" 클릭, 입금 진행 → 전부계약이전 신규 완료
	 2) 퇴직연금 신규(일부이전 경우) 가입자부담금 존재 시 추가징구 서류: 연금계좌이체명세서(필수), 연금납입확인서(필수), 이익계산서(선택) 통합단말 [802] 화면에서 "입금예정관리" 클릭, 입금 진행 → 전부계약이전 신규 완료

6. 유의사항(타사업자 → 당행)

□ 구속성 대상 여부 사전 필수 확인 요망

- ① 타사업자에서 당행으로 계약이전 되는 경우 \rightarrow 구속성 대상에 포함됨(동일 금액 이내라도 구속성 대상에 포함됨)
 - ※ 타사업자에서 당행으로 계약이전 시, 계약이전 관련 매도상품 중 최종 매도 예정일을 감안한 계약이전 금액 입금일과 여신실행일을 감안하여, 구속성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 필요
- ② 당행에서 당행으로 계약이전 금액 범위내 계약이전 신규인 경우 → 구속성 대상에서 제외됨.
 - ※ 단, 계약이전 관련 자금이 영업점 법인 계좌에 입금된 당일 계약이전 신규가 진행되어야 함. (동일자에 신규 미진행시 구속성 제어됨)

□ 계약이전 시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

- ① 계약이전 시, 운용상품이 정기예금이 경우 → 만기이율이 아닌 일반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. 따라서 사전 섭외 시, 추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바, 고객에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을 사전 고지하여야함.
 - ※ 계약이전으로 인한 상품 해지 시, "특별중도해지이율"이 아닌 "일반중도해지이율"이 적용됨

□ 수수료 관련 사전 안내 요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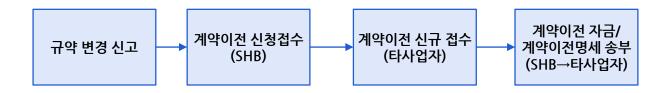
- ① 전부계약이전 시, 미납수수료가 전부 납부 되어야 계약이전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 요망
- ② 수수료는 계약이전 전산등록한 당일 조회된 금액을 안내 요망
 - ※ 계약이전 신청 후 보완 또는 반송으로 전산등록 지연 시, 추가 수수료 발생함

Ⅲ. 당행에서 타사업자로 계약이전 프로세스(당행 → 타사업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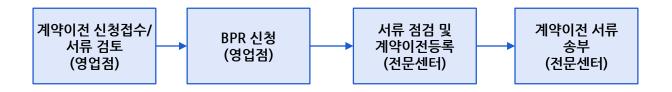
1. 당행에서 타사업자로 계약이전이란?

기존의 타사업자와의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(일부 계약이전의 경우 기존 계약 유지)하고, 당행과 퇴직연금 계약을 신규하고, "가입자" 또는 "적립금"을 타사업자로부터 이전을 받는 업무

2. 계약이전 프로세스



3. 계약이전 신청 및 처리 프로세스(SHB)



- □ **전부이전:** 기존 당행과의 퇴직연금 계약을 전부를 이전하는 것. 전부이전 완료 시, 당행의 퇴직연금은 자동으로 계약해지 처리가 됨
- □ 일부이전: 기존 당행의 퇴직연금 계약에서 가입자 일부 or 적립금 일부를 타사업자로 이전하는 것. 기존의 당행과의 퇴직연금의 계속 유지됨

4. 계약이전 시 징구서류

업무 단계	상세
■ 전부 계약이전	1) 퇴직연금 규약 사본
(DB/DC/기업형IRP)	2) 규약신고수리증 사본
	3) [퇴직연금] 계약이전 신청서
	4) [퇴직연금] 계약이전 일괄명부
	5) [퇴직연금] 근로자합의서(계약이전 및 계약이전)_노동조합 있는 경우 or
	[퇴직연금] 근로자동의서(계약해지 및 계약이전)_노동조합 없는 경우 +
	[퇴직연금] 동의명부
	6) 계약이전 사유별 증빙서류: 합병/ 양수도 계약서, 고용승계계약서 등
	7) 인수기관(자산관리기관)의 계좌사본
	8) 인수기관(운용관리기관)의 계약이전 요청 공문
■ 일부 계약이전	1) 퇴직연금 규약 사본 ← 최초 계약이전 시에만 징구
(DB/DC/기업형IRP)	2) 규약신고수리증 사본 ← 최초 계약이전 시에만 징구
	3) [퇴직연금] 계약이전 신청서
	4) [퇴직연금] 계약이전 일괄명부

5. 유의사항(당행 → 타사업자)

□ 지연보상금 발생 유의

① 지연보상금이란

금융감독원 주관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퇴직연금 계약서 개정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계약이전 처리 시, 고객에게 지연 처리된 일수만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

- ② 계약이전신청서 작성 시, 마지막 "서류접수 이력관리" 필수 작성(직원작성) → 최종 서류 점검 "이상 없음" 일자가 최종서류접수 확인일로 해당 일자 기준으로 지연보상금 발생 체크
- ③ 계약이전 접수건은 각종 분쟁 및 민원 예방 차원에서 당일 접수를 원칙으로 업무처리 진행

□ 계약이전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

- ① 계약이전 시, 운용상품이 정기예금이 경우 → 만기이율이 아닌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. 따라서 추후 고객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바. 고객에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을 사전 고지해야 함.
- ② 이전사유에 따라 "일반중도해지 이율" 또는 "특별중도해지 이율"이 적용됩니다(적용 기준은 상품약관별로 다름)
 - ※ 일반적으로는 "일반중도해지 이율 " 이 적용되나, "동일 자산기관內 계약이전"인 경우, 상품별약관에 따라 "특별중도해지 이율 " 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← 상품별 약관에 따라 다름.

□ 수수료 관련 사전 안내 요망

- ① 전부계약이전 시, 미납수수료가 전부 납부 되어야 계약이전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 요망
- ② 수수료는 계약이전 전산등록한 당일 조회된 금액을 안내 요망
 - ※ BPR 의뢰 후 보완 또는 반송으로 전산등록 지연 시, 추가 수수료 발생함